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개정

의 안 번 호	제433호
의 결 년월일	2005. 9. 9 (제121회)

제안년월일 : 2005년 9월 26일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(2005. 8. 5, 대통령령 제16058호)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일수 1일에 대한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(안 제3조제2항)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□ 기타참고사항 :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
부천시조례 제　　호

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900,000원” 및 “200,000원”을 각각 “90만원” 및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70,000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	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제2조(의정활동비) ① (생 략) 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200,0000원으로 하고, 부천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	제2조(의정활동비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90만원----------20만원----------.
제3조(회기수당) ① (생 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,000원으로 하고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	제3조(회기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10만원----------.